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의 FTA 활용방안

석유화학협회 국제통상세미나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 권용현



Table of Contents

Intro – FTA 적용상의 오해

I 석유화학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II 정확한 HS 품목분류

III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IV 대체재 이슈의 검토

V 원산지 검증 대응

INTRO – FTA 적용상의 오해



① 스위스에서 선적 또는

② 스위스업체가 매매계약당사자여도 한EFTA의 적용은 불가

☞ 스위스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스위스산이 입증되어야만 한EFTA 적용 가능

INTRO – FTA 적용상의 오해



스위스



한국

매매계약 당사국이 FTA 협정국임 → 한EFTA 적용 가능 ?

FTA 적용 요건

거래요건

역내 거주자간 물품을 수출/수입할 것

품목요건

협정에 의한 양허품목에 해당할 것

원산지요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운송요건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 (우회수입방지)

절차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수입통관절차 준수

INTRO – FTA 적용상의 오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1. 석유화학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구분	품목	HS Code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한EU FTA 협정	기타
기초유분	에틸렌	2901.21	CTSH	CTH or MC50	
	프로필렌	2901.22	CTSH	CTH or MC50	
	부타디엔	2901.24	CTSH	CTH or MC50	
	벤젠	2902.20	CTH	CTH or MC50	
	톨루엔	2902.30	CTH	CTH or MC50	
합성수지	HDPE	3901.20	CTH(중량기준)	CTH or MC25	
	PP	3902.10	CTH(중량기준)	CTH or MC25	
	PS	3903.19	CTH(중량기준)	CTH or MC25	
	ABS	3903.30	CTH(중량기준)	CTH or MC25	
	PVC	3904.10	CTH(중량기준)	CTH or MC25	
	에폭시	3907.30	CTH(중량기준)	CTH	
	PET	3907.60	CTH(중량기준)	CTH or MC25	
중간원료	EDC	2903.15	CTH	CTH or MC50	
	VCM	2903.21	CTH	CTH or MC50	
	MMA	2916.14	CTH	CTH or MC50	

HS 품목분류가 아주 중요

1. 석유화학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구분	품목	HS Code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한EU FTA 협정	기타
합성원료	AN	2926.10	CTH	CTH or MC50	
	TPA	2917.36	CTH	CTH or MC50	
	DMT	2917.37	CTH	CTH or MC50	
합성고무	SBR	4002.19	CTH	CTH	
	BR	4002.20	CTH	CTH	
	EPR	4002.70	CTH	CTH	
	SB-Latex	4002.11	CTH	CTH	
	IIR	4002.31	CTH	CTH	
	CR	4002.49	CTH	CTH	
	NBR	4002.59	CTH	CTH	
기타 제품	MA	2917.14	CTH	CTH or MC50	
	PPG	3907.20	CTH(중량기준)	CTH	
	MDI	2929.10	CTH	CTH or MC50	

HS 품목분류가 아주 중요 ←

II. 정확한 HS 품목분류

29류 유기화학품의 HS 품목분류 기준

순도에 따라 HS 분류 ←

품목	미만	순도	이상	순도기준
에탄	2711호	95%	2901호	용적
에틸렌	2711호	95%	2901호	용적
프로필렌	2711호	95%	2901호	용적
벤젠	2707호	95%	2902호	중량비
톨루엔	2707호	95%	2902호	중량비
크실렌	2707호	96%	2902호	중량비
안트라센	2707호	90%	2902호	중량비
페놀	2707호	90%	2907호	중량비

II. 정확한 HS 품목분류

29류 유기화학품의 HS 품목분류 기준

용도에 따라 분류 시 주의사항

특정용도에 따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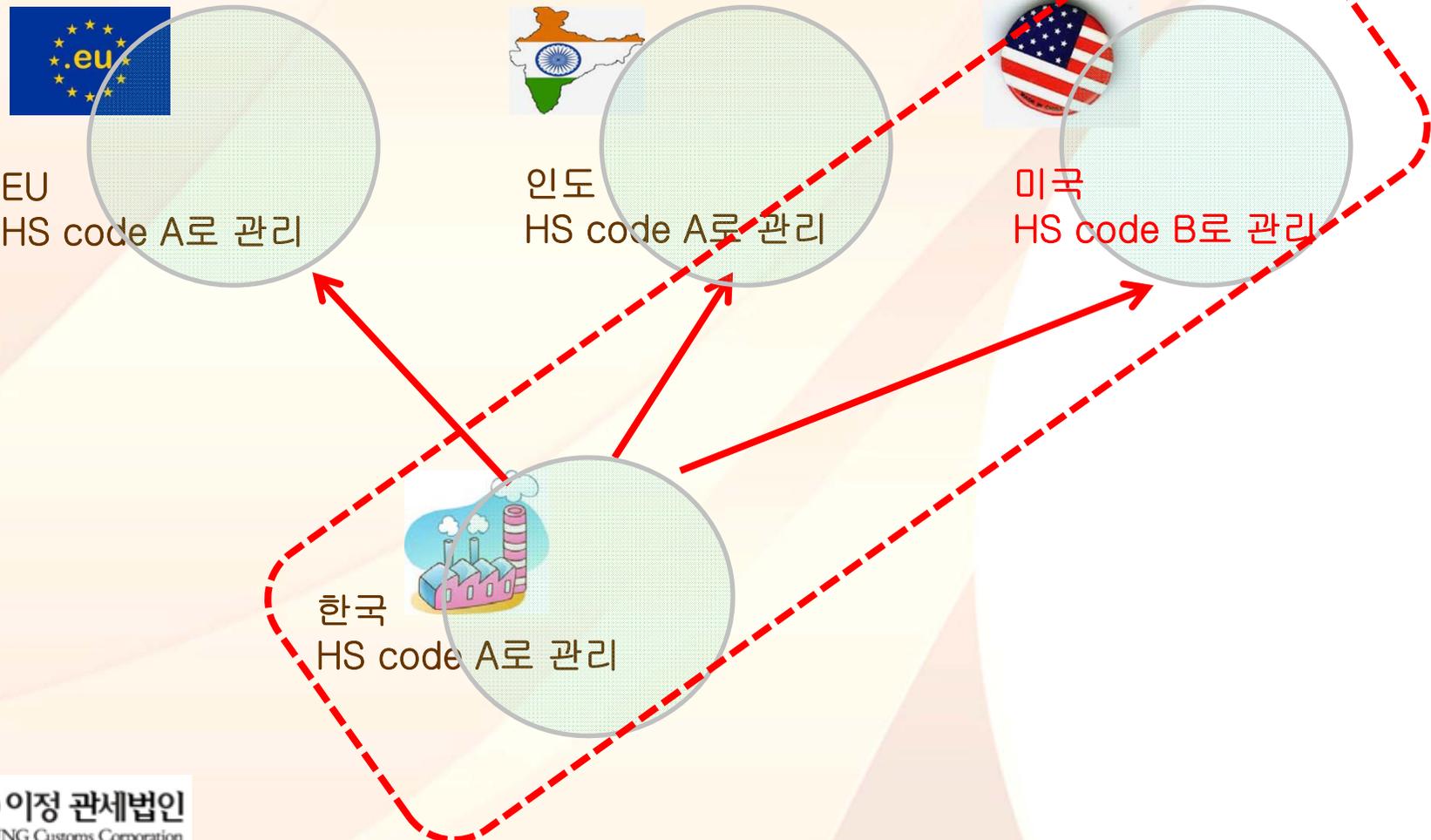
품목	용도	HS CODE	분류상 유의	HS CODE
화학조제품	가황촉진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 합성수지, 합성고무 제조에 사용	3812	당해 물품이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 일 경우	29류

성분에 따라 HS 분류

II. 정확한 HS 품목분류

상대국에서 다른 HS CODE를 요청하는 경우

- ❖ 어느 HS CODE가 정확한가?
- ❖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HS code 로 발급해야 하는가?



II. 정확한 HS 품목분류

세번변경기준 적용

산화방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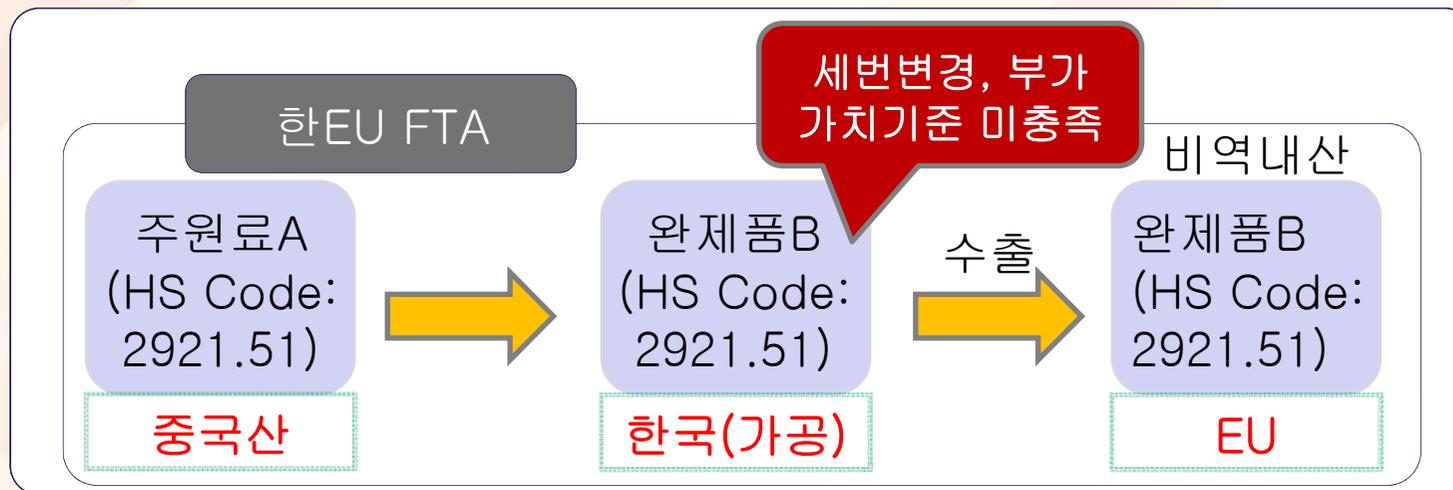
HS code	품명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EU 관세율
2921.51	산화방지제	CTH or MC50	기본세율 : 6.5% (일부제품 0%) 한EU FTA 세율 : 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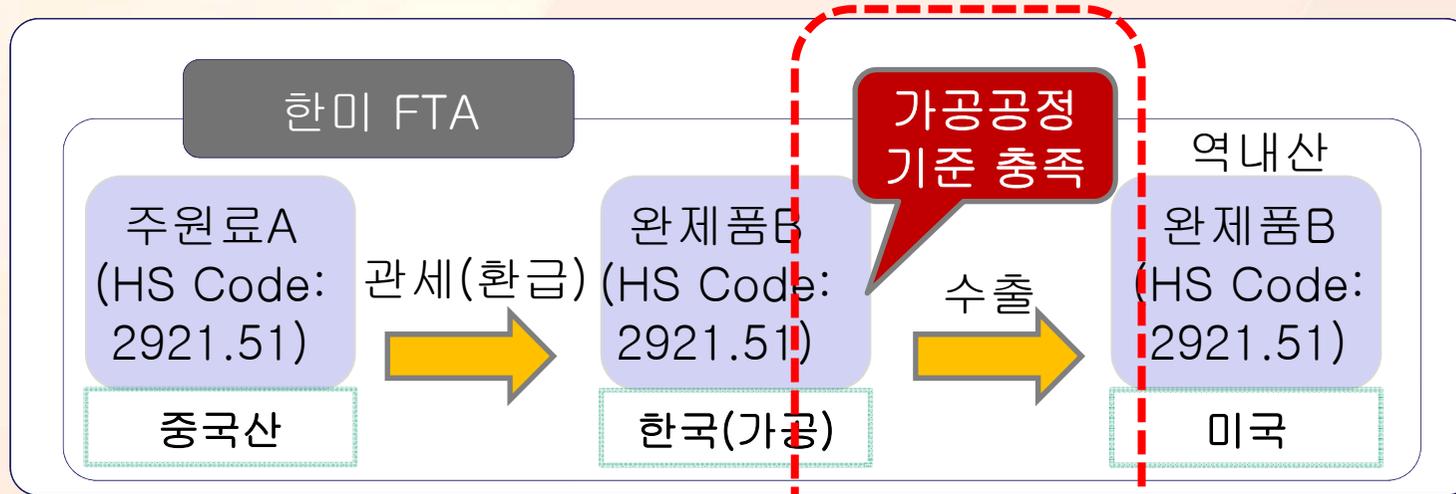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한EU FTA 적용 불가

III.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 한미 FTA



HS code	품명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관세율
2921.51	산화방지제	CTH or 가공공정기준	기본세율 : 6.5% 한미 FTA 세율 : 0%

한미 FTA 적용 가능

III.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 한미 FTA

한미 FTA 화학제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

- 예시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 제38류)

제 6부 관세율표 구성

28류 무기화학품	각종 무기화학물
29류 유기화학품	유기화학품
30류 의료용품	
31류 비료	
32류 유연·착색제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유도체, 염료/안료, 페인트 등
33류 향수 화장품	
34류 비누 인조왁스	
35류 단백질	
36류 화약 성냥	
37류 사진영화용재료	
38류 화학공업생산품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III.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 한미 FTA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됨.

1. '화학반응'의 정의 :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
2. 예외 규정 : 물/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됨.

-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8) 핵등급용

III.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 한미 FTA

규칙 3 혼합 및 배합

1. 대상 제품
 - 제30류 ~ 제31류
 - 제33류 ~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 살충제/제초제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가공 공정
 - (가) 혼합/배합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
 - (나) 역내가공원칙 준수
 - (다)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어야 함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1. 대상 제품
 - 제30류, 제31류,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
2. 가공 공정
 - (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이 역내에서 발생
 - (나) 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나, 단순 분쇄/압착은 제외
 - (다)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어야 함

III.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 한미 FTA

규칙 5 표준 물질

표준 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됨.

1. '표준물질'의 정의

표준 용액을 포함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

규칙 6 이성체 분리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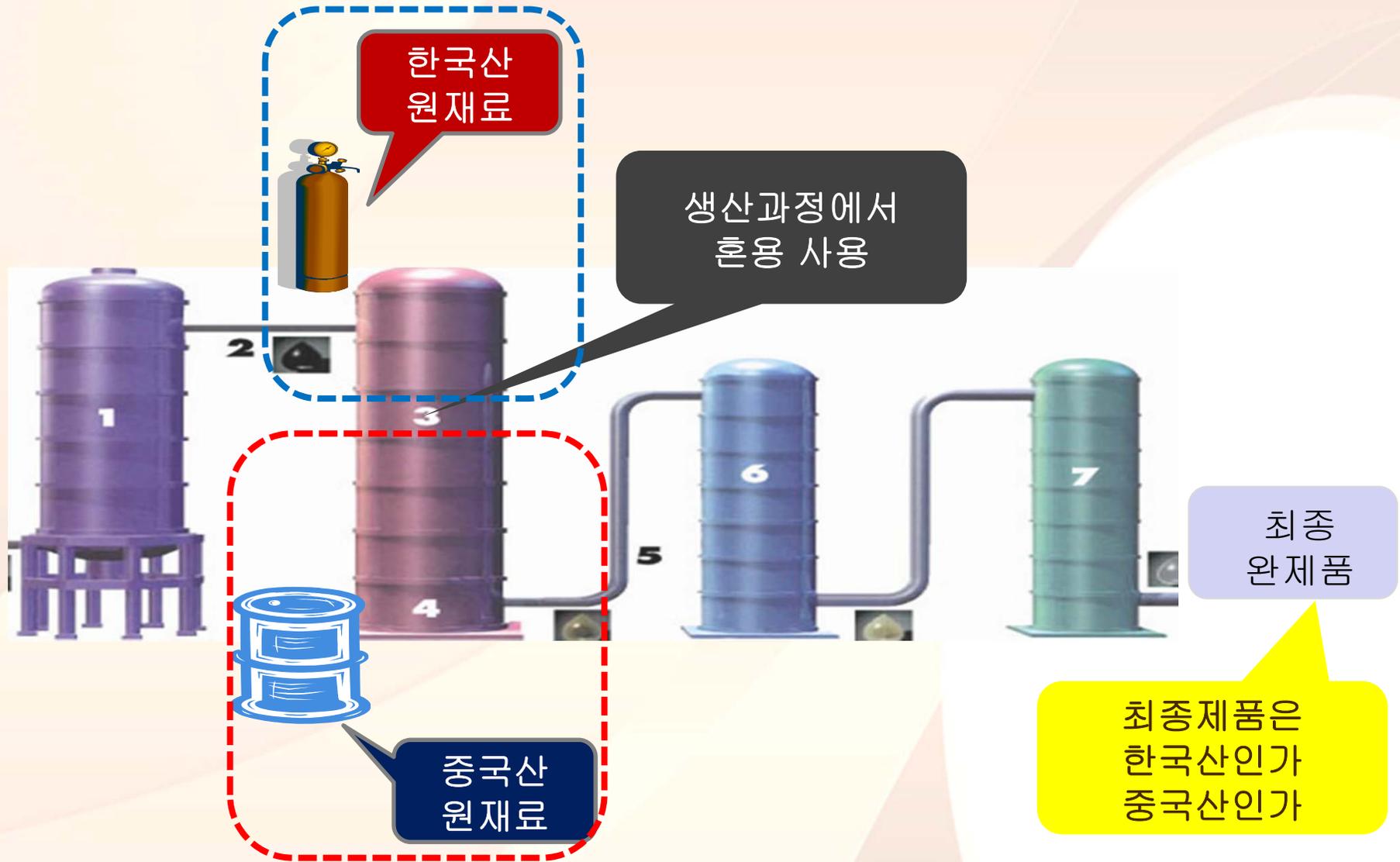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되어도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IV. 대체재 이슈의 검토



IV. 대체재 이슈의 검토

Chevron Texaco의 Base oil 대체재료 적용 사례

자동차모터유허활유(Lubricant motor oil)에 사용되는 기유(base oil)를 역내산/역외산에서 구매하여 혼용사용

역내산/역외산 기유는 성분, 정제단계, 성질 등 서로 상업적으로 호환대체 사용이 가능한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함

생산과정에서 common storage tank에 역내산/역외산 구분 없이 함께 보관 사용됨

Multi Sourcing

혼용 사용
물리적 구분에 어려움

대체가능재료
정의에 부합

재고관리기법에 의해 역내산/역외산 기유의 각각 사용량이 검증된다면
역내산 원재료 부분은 NAFTA 적용이 가능함

IV. 대체재 이슈의 검토

대체가능재료 관련 규정

1. 한-EU FTA 협정문 상의 규정(원산지 규정 제2부제11조 ‘재료구분회계’)

-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IV. 대체재 이슈의 검토

대체가능재료 관련 규정

2. 한·미 FTA 협정문 상의 규정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V.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의 리스크 요소

세울 관련

- ✓ 고관세 품목
- ✓ 상호대응세율, ASG, 미양허 품목, 계절관세 적용 품목
- ✓ 반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

특이사항 발견

- ✓ 협정 발효 이후 수입금지 품목 및 신규수입품목
- ✓ 임가공 수입물품
- ✓ 자가생산시설이 없는 공급자의 물품
- ✓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
- ✓ 대부분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물품

V. 원산지 검증 대응

1단계 : 형식적 요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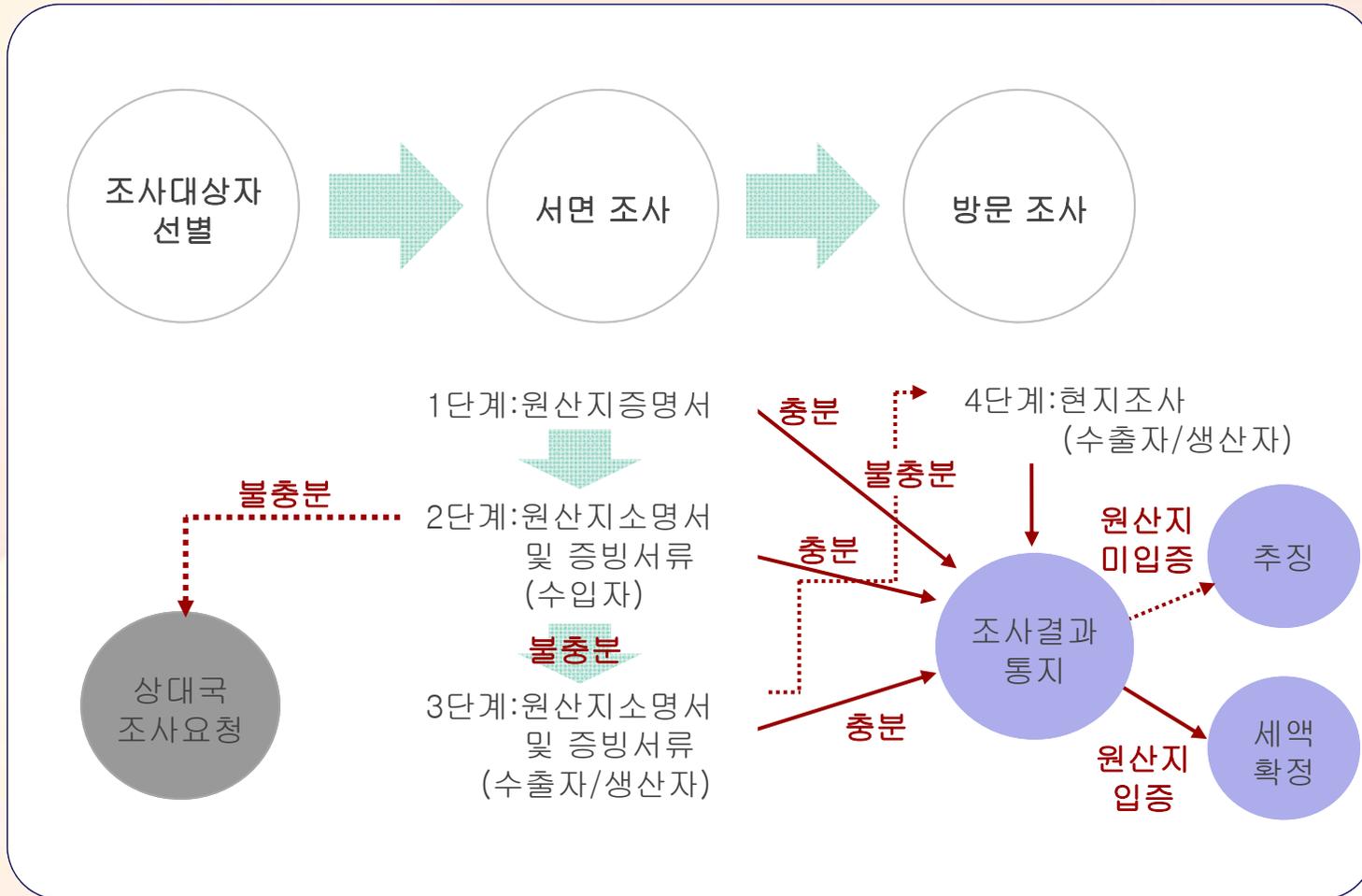
2단계 : 실체적 요건 검증

특혜 세율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품목분류
수출·공급가격

V.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조사 과정



V. 원산지 검증 대응

1단계 : 형식적 요건 검증

2단계 : 실체적 요건 검증

특혜 세율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품목분류
수출·공급가격



V. 원산지 검증 대응 - 체크리스트

서면검증 검토 요약서		
검토사항	제출자료	검토 결과
1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보기 위한 자료를 기재 예 : 원산지증명서	제출 미제출 기재
2	원산지 결정기준	
3	수출물품 기준가격 적정성 예 : 적용환율	
4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적정성	
5	재고관리기법의 적정성	
6	누적대상물품 및 누적방법	
7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성	
8	국내산 재료의 원산지 적정성	
9	직접운송원칙	
10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	
11	기타(추가사항 있는 경우 기재)	

V. 원산지 검증 대응 - 체크리스트

현장검증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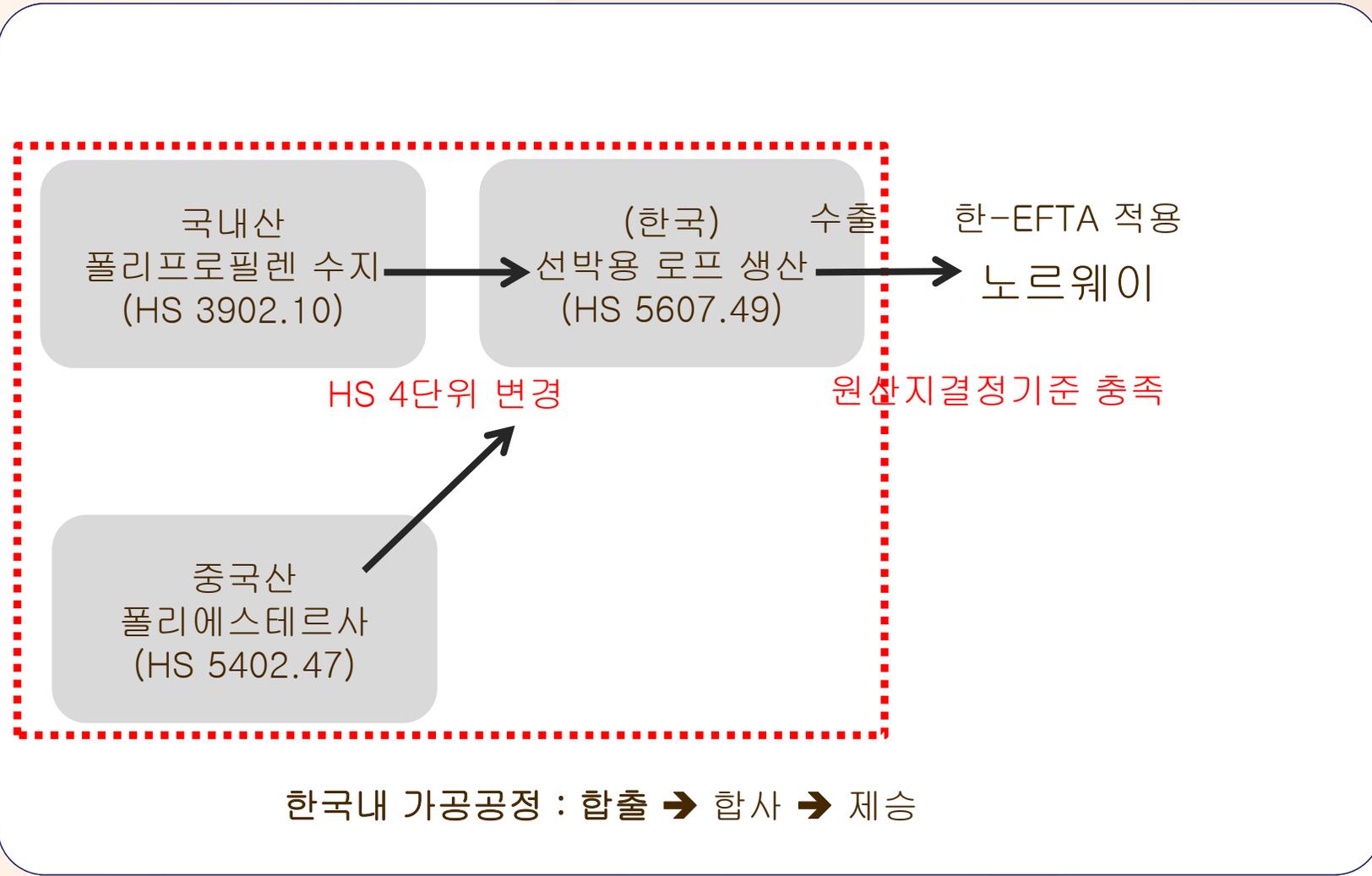
현장검증 사업장		※ 본사 또는 공장명 기재
현장 확인 목록		업체 준비사항
1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시설 · 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2	대상물품의 재료 입고 및 불출내역	
3	생산 완료 후 제품 포장 및 출고 내역	
4	원산지 증빙서류별 실제 보관 및 관리 실태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6	원산지증명서 서명자 지정여부	
7	원산지자율관리업무 매뉴얼	
8	원산지 전산관리시스템	
9	기타	
10	추가 확인 목록 있는 경우 기재	

V. 원산지 검증 대응 - 사례

- 품명 및 수출국 : 선박용 로프, 한국
- 적용협정 : 한-EFTA
- 원산지기준 : CTH
- 검증배경 : 노르웨이 세관의 검증 요청
- 검증결과 : CTH 요건 충족

HS code	품명	한-EFTA 원산지결정기준
5607.49	선박용 로프	CTH (HS 4단위 변경)

V. 원산지 검증 대응 - 사례



V. 원산지 검증 대응 - 사례

- 품명 및 수출국 : 폴리프로필렌 수지, 한국
- 적용협정 : 한-EFTA
- 원산지기준 : CTH 또는 MC 50%
- 검증배경 :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
- 검증결과 : 국내산 인정

HS code	품명	한-EFTA 원산지결정기준
3902.10	폴리프로필렌	CTH or MC50



공급원재료에 대해 원산지 확인서 교부

V. 원산지 검증 대응 - 서류의 보관

기업정보

- ✓ 대표자/주소/업종/조직도/담당자/사업자등록번호/공장위치
- ✓ 종업원수/최근3년간 매출액/최근3년간 수출입실적
- ✓ 생산품목 및 생산규모/수출품목(년간금액)/수입품목(년간금액)
- ✓ 주요 국내외 거래선/회계감사업체

생산정보

- ✓ 생산시설/생산장비/생산능력
- ✓ 생산품목별 원자재리스트
- ✓ 생산품목별 제조원가내역서
- ✓ 생산품목별 생산공정설명서

회계 정보

- ✓ 총매출액 중 재료비/인건비/제조경비/이윤(세전)의 비중
- ✓ 재고품 평가 방법 : 개별법, FIFO, LIFO, 평균법
- ✓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 정액체감법, 정율체감법, 기타
- ✓ 생산장비 내구연수 기준표
- ✓ 제조원가 산정방법

V. 원산지 검증 대응 - 서류의 보관

원산지 정보

- ✓ 생산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 해당 업체의 원산지결정방법 및 논리
- ✓ 생산품목별 투입원재료, 소요량 및 취득 가격
- ✓ 생산품목별 원재료 공급자 리스트
- ✓ 누적기준 적용시 해당 재료에 대한 C/O 구비 여부

세번변경기준

- ✓ HS 코드별 원자재 목록,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최종제품의 국내수입신고서 등

부가가치기준

- ✓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별 인보이스, 손익계산서, 제조단가산정 내역서, 인건비 및 간접비의 적정할당여부, 대체재료사용여부, 재고관리기법, 원재료수불대장 등

누적기준

- ✓ 해당 원재료의 C/O

직접운송기준

- ✓ 최초 B/L 경유 B/L, 최초 인보이스, 최종 인보이스,
- ✓ 제3국 보세창고 보관 증빙서류

감사합니다 !

권용현 관세사	☎ 010 5297 4543	yh.kwon7@gmail.com
나형진 관세사	☎ 010 6636 3779	nahyongjin@gmail.com
김은숙 관세사	☎ 010 4713 4003	keskp77@gmail.com